

설비 공급 계약서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263-1 시화공단2다 302 소재 아토 주식회사 (이하"갑"이라고 칭함)와 광주광역시 광산구 장덕동 978-1번지 소재 엘지이노텍 주식회사 (이하 "을"이라고 칭함)는 Purifier 공급 및 설치에 대한계약을 첨부와 같이 체결한다.

20005년 06 월 23 일

공급자(갑)

경기도 시흥시 정황동 1263-1 시화공단 2다 302

아토 (주)

대표이사 문상



수요자(을)

광주 광역시 광산구 장덕동 978-1번지

엘지 이노텍 주식회사

대표이사 허 영



장 부문장 사업부장 대표이시

旭





제 1조: (계약내용)

1) "을"은 "갑"이 개발한 아래 명시된 목적물을 아래조건에 기준하여 매입한다.

(단위: 원)

		The state of the s	AND RESIDENCE OF THE PARTY OF			
	설 비 명	규 격	수량	단 가	금액	비고
١	Purifier	N2 50 nm3/h	1	130,000,000	130,000,000	
ı	합계 금액				130,000,000	

2)설비의 구성및 추가 부분품에대한 공급은 첨부된 견적서,List를 기준한다 3)견적서와 함께 Spec과 사양도 함께 제출한다

제 2조 (납기및 납품장소)

- 1) 납기일자: 2005년 08월 06일
- 2) 설치완료: 2005년 08월 19일
- 3) 납품장소 및 설치장소: "을"이 지정하는 장소
- 4) 운반및 설치: 운반및 설치에 관한 모든 위험 및 비용은 "갑"이 부담한다.
- 5) 납기라함은 "갑"이 "을"의 원하는 장소에 설치하고 "을"의 입회하에 시운전을 하여 "을"이 발행하는 입고검수서의 양식에 의해서 합격확인을 하는 시점을 말한다.

제 3조 (검사방법)

- 1) 목적물에 대한 검사는 "을"의 검사기준에 의해 검사를 하며, "을"의 검사기준에 불합격시 "갑"은 즉시 회수교체후 "을"에게 재검사를 요청 하여야 한다. 단,재검사 역시 납기내에 완료하여야 하며 그에따른 일체의 위험과 비용은 "갑"이 부담한다
- 2) "을"은 "갑"과 계약시점의 사양을 기준으로 검사를 실시하며 본 목적물이 상호합의된 사양을 만족하지 못할때는 "갑"이 개발에 발생된 비용에 대해서는 "을"은 책임지지 아니한다.

제 4조 (대금지불조건)

위 제1조의 대금지불방법은 "을"의 대금지불조건에 따른다.(Set-up 후 100%)

제 5조 (지체상금)

- 1) "갑"은 계약서상에서 정한 납기내에 목적물을 납품하지 못할때 매 지체일수 총 계약금액의 1000분의 3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을"에게 지불하여야 하며 이때 지체상금일수는 30일을 초과할수 없다.
- 2) 천재지변 또는 "을"의 귀책사유로인한 납기지연은 지체상금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3) "갑"이 지체상금을 지불할때 "을"로부터 받을 잔금에서 우선적으로 변제한다
- 4) 지체 일수는 계약된 납기일로부터 "을"의 합격증서 발행일까지 지체된 시간의 합으로산정

제 6조 (보증보험의 가입)

"갑"은 본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위해 아래의 조건으로 보증보험을 국내 보증 보험회사에 가입후 보험증권을 "을"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피보험자는 "을"로 한다.

1) 이행(계약) 보증보험

보증금율은 설비금액의 10%로 하고 보험기간은 납기일자 까지로 한다. 그리고 "갑"은 보험증권을 "을"이 선급금을 지불전까지 "을"에게 제출 하여야 하며 만약 이행치 아니하면 "을"은 "갑"이 제출시까지 대금 지급을 보류 할 수 있으며, 이때 "갑"은 "을"에게 이의를 제기 할수 없다.

2) 이행(하자) 보증보험

보증금율은 설비금액의 10%로 하고 보험기간은 본계약서에 명시된 무상수리 기간으로 한다.

그리고 "갑"은 보험증권을 "을"의 요청이 있을때 "을"에게 제출 하여야 하며 만약 이행치 아니하면 "을"은 "갑"이 제출시까지 대금 지급을 보류할수 있으며, 이때 "갑"은 "을"에게 이의를 제기할수 없다.

3) "갑"은 "을"이 요청한 보험증권을 미제출시 "을"이 계약파기요청이 있을때 "갑"은 "을"에게 이의를 제기할수 없다.

제 7조 (도면승인)

- 1) 목적물의 사양에 대해서는 상호 별도협의후 결정하며 본 사양을 기준하여 "갑"은 설계하여야 한다.
- 2) "갑"은 "을"과 협의된 사양을 기준하여 설계된 도면을 "을"에게 제시하여 승인을 두 하여야 한다.

제 8조 (사양변경)

"을"이 승인한 도면에 대해서 "갑"은 "을"의 서면승인없이는 변경할수 없다 단, '갑"의 판단으로 변경이 불가피 할때는 "갑"이 "을"에게 서면으로제시후 "을" 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또한 "을"의 요청으로 사양이 추가되는 경우는 추가에따른 제비용에 대해서는 "을"이 부담한다.

제 9조 (가격변동)

"갑'은 계약된 목적물이 납품완료될때까지 물가상승이 있더라도 계약된 목적물의 가격인상을 요구할수 없다.

제 10조 (기술지도)

W.

- 1) "갑'은 "을"이 목적물을 정상가동 할수있도록 "을"이 요구하는 인원에게 "을"이 요청하는 수준의 기술적인 지도를 하여야한다. 단 교육비용은 견적서에 명기된 비용이외의 소요비용은 "갑'이 부담한다
- 2) "갑"은 목적물이 "을"에게 인도될때 목적물에대한 취급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11조 (품질보증)

"갑"은 ("을"의 합격일 기준)12개월 이내에 발생하는 고장또는 하자에 대해서는 "을"로부터 그사실을 통보받은 시간으로 부터 24시간 이내에 "을"의 장소에 도착하여 목적물에 대해 적절한 인원이 적절한 기술의 수리에 착수 하여야 한다. 단,"갑"이 "을"의 고의또는 중대과실로 인한 고장임을 증명할때는 상호협의후 유상으로 처리 할수있다.

제 12조 (계약의 해지)

- 1) 제작기간중 "을"이 본 계약을 위배하여 "갑"의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상호 협의후 계약을 해지할수 있다.
 - 이때까지 제작중 "갑"에게 발생한 비용은 "을"이 부담하여야 한다.
- 2) "갑"의 제작기간중 "갑"의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을"이 인정될때는 상호 협의후 계약을 해지할수 있다 이때 "갑"은 "을"로부터 수령한 선급금에대해 현금또는 "을"이 발행한 어음을 지체없이 반환 하여야하며 "을"의 손실비용을 "갑"이 부담 하여야 한다

제 13조 (안전사고 및 제조물 책임)

- 1)본 계약후 시공중 발생하는 안전사고 또는 "갑"의 과실(설계또는 시공의 잘못등)로 인한 사용중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갑"이 책임진다.
- 2) "갑"은 자신의 비용과 부담으로 제조물 하자에따른 일체의 책임으로부터 "을"을 면책 시켜야한다. 단, "갑" 이"을"을 면책시켰다 할지라도 "을"의 손해배상 청구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 14조 (타 공사자와의 관계)

"갑"의 목적물에 대한 제작, 납품, 설치와 관련하여 "갑"이 타 공사자와 하도급 이 있더라도 "갑"이 직접 공사 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 15조 (양도금지)

- 1) "갑"은 본 계약서상의 권리를 "을"의 사전 서면 동의없이 제3자에게 양도, 담보 제공등의 행위를 할수 없다.
- 2) "갑"은 "을"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목적물의 제작,납품,설치작업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일괄하여 제3자에게 위임하거나 하도급을 줄수 없다.

제 17조 (비밀 유지)

"을"과 "갑"은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없이 본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언론에 누설 할 수 없다. 또한 "갑"과 "을"은 본 계약의 이행과정 중 취득하는 상대방의 경영상, 영업상, 기술상 등 제반 정보에 대한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이를 위한하였을 경우에는 "을"은 본 계약을 해제 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으로 대불지불금액의 20%를 청구 할 수 있다.

제 16조 (해 석)

1) 본 계약에 대해서 이견이 있을시는 상호협의 처리한다.

11(3)

2)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내용은 통상 상관례에 준하며, 본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시 서울지방법원을 1심으로 한다.